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9 July, 2018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OECD: First peer reviews of country-by-country reports, in advance of June 2018 rollout](#)

OECD: 2018년 6월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에 대한 첫 번째 공동평가자료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국가별보고서 계획에 대한 공동평가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국가별보고서 계획의 첫 번째 공동평가는 "...전세계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의 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과정에서 핵심 요소의 이행을 향한 의미 있는 발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평가자료들은 국가별보고서 계획(Country-by-Country Reporting Initiative)이 적용되는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국가들이 투명성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새로운 보고 의무를 도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OECD는 밝혔습니다.

국가별보고서 교환은 2018년 6월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국가간 상호관계의 수는 추후 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의 첫 번째 연례 공동평가는 주로 국내법 및 행정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8년 1월 시행된 국가별보고서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체계에 모든 구성원이 대상인 2차 연례 공동평가는 2018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해당 공동평가는 정보 기밀성 및 적절한 사용 조건뿐만이 아닌 정보 측면의 교환 또한 공동평가의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가 처음 교환된 후, OECD 는 국가별보고서가 이전가격 및 기타 BEPS 관련 위험을 평가할 때 세무당국에서 해당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Canada: Canada Impresses - OECD Peer Review of CbC Reporting](#)

캐나다: OECD 의 국가별보고서 공동평가에서 기대에 충족되는 모습을 보여준 캐나다

캐나다의 국가별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OECD 는 국가별보고서 계획에 대한 첫 번째 공동평가를 발표하였습니다. 공동평가는 94개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표된 보고서는 94개국에 포함되는 캐나다의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국내 법률 및 행정체계를 조사하고 정보교환 체계와 국가별보고서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기밀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국가별보고서는 특정 재정적 및 사업활동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각 지역마다 대규모 다국적기업이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평가는 캐나다에 하나의 실질적인 사항만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권고사항은 캐나다 지역의 제출조건을 수정하거나 국가별보고서 제출권고사항을 특정조건에서만 적용되도록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OECD 는 연례 공동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무당국이 국가별보고서를 사용하여 이전가격 위험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ECD 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는 국가들이 국가별보고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조세위험이 낮고 높은 부분을 파악하여 조세위험이 높은 곳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시켜 조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ECD 의 권고사항

OECD 는 캐나다의 법안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조건을 다소 과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법안에 따르면 캐나다와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 위치한 최종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제출조건에 따라 캐나다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수 있으며, 이는 OECD 가 발표한 국가별보고서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조건입니다. 캐나다는 해당 사항에 대해 캐나다와 국제적 협의를 이루지 않은 국가에 위치한 최종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비교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캐나다는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가입국이며 93개의 국가와 양국 간 자동정보교환을 제공하는 조세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 이러한 캐나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OECD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조건 수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례 공동평가

공동평가는 국가별보고서에 동의한 95개 국가들의 국내법과 행정체계, 그리고 기타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는 2018년 1월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동평가는 최근 시작되었으며, 해당 공동평가는 정보의 교환, 기밀성, 그리고 적절한 사용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평가에 따르면 국가별보고서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는 BEPS Action 13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법령의 특정 측면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았으며, 해당 국가는 관련 규정을 표준규정에 부합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Thailand: Draft Transfer Pricing law proposed to the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 for enforcement for Fiscal Year 2019](#)

태국: 2019 사업연도 시행 목적의 이전가격법률초안 국가입법회의에 제출

2018년 1월 3일 태국 내각에 의해 승인된 이전가격법률초안과 관련하여 태국 정부는 이전가격 관련 세법(Revenue Code)의 개정을 위한 입법초안을 국가입법회의에 2018년 6월 5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 및 갱신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가격법률은 2019년 1월 1일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것이며, 이는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의 최초 제출일자가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9년 12월 31일일 경우 2020년 5월 30일, 2020년 3월 31일일 경우 2020년 8월 28일이 제출일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 제출된 최신 입법초안은 회계연도 동안 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납세자의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거래자간 거래금액에 관한 정보를 담은 연례보고서를 구비 및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 법률이 승인되면, 태국 조세당국은 순차적으로 태국 내각에 2차 법률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이차 법률안	개념 체계	잠정 일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법인 혹은 법률상 특수관계합작법인, 특수관계거래, 비특수관계거래, 거래요건, 사전승인제도 독립기업원칙 고려 비교가능성 분석 정상가격범위의 계산 및 산정 수익과 비용의 조정을 통한 세액계산 특수한 거래에 대한 조건들 고려 ex. 무형자산 거래 정상가격 사전승인 요청 	
1. 정부 규정 - 특수관계법인 혹은 법률상 특수관계합작법인의 수익과 비용의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립기업원칙 고려 비교가능성 분석 정상가격범위의 계산 및 산정 수익과 비용의 조정을 통한 세액계산 특수한 거래에 대한 조건들 고려 ex. 무형자산 거래 정상가격 사전승인 요청 	법률 시행 후 60일 이내에 내각에 제안
2. 정부 규정 - 71조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법인 혹은 합작법인의 수익기반 산정	연례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 및(혹은) 이전가격보고서에 회사 혹은 법률상 합자회사의 제외를 위한 수익기반 및 제외된 소득 범주의 산정	법률 시행 후 60일 이내에 내각에 제안
3. 조세국 국장 통지 -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 내용	69조에 의거 연례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 제출	(1), (2)가 시행된 후 30일 이내 공포 예정
4. 조세국 국장 통지 - 특수관계자간 거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보고서 혹은 증거자료의 구비 및 제출 필요	회사 혹은 법률상 합작법인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통지에 열거된 대로 보고서 혹은 증거자료를 구비 필요	(1), (2)가 시행된 후 30일 이내 공포 예정

KPMG 의견

이전가격법률 초안은 태국 입법절차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 법률의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임을 미루어보았을 때, 2018년 법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의 잠정 최초제출일이 2020년 5월임에 따라, 정확한 이전가격분석, 문서화 및 예상되는 필수 정보공개내용들에 대한 준비가 선제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세무당국과의

이전가격조정 및 가산세 최소화를 위한 논의를 어우르는 이전가격위험 관리가 필수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dia: India Sets 90-Day Limit on Inter-Group Pricing Changes\(Bloomberg TP Report vol. 28, no. 13, pg. 22\)](#)

인도: 그룹 간 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에 대한 90일 회수 규정

인도 세무당국은 그룹 간 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을 통한 이전가격소득조정금액을 인도 내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 직접세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의 6월 19일 공고에 따르면, 최초 이전가격정책을 통해 설정된 정상가격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발생한 차이금액은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 혹은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체결 후 90일 이내 인도에 소재한 기업으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해당 개정 공고안은 세금 부담이 적은 국가에 이익을 보관하는 기업에 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공고안 발표 전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기한 후 90일 이내 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하여 과태료 및 소송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CNK RK 회계법인(CNK RK & Co.,) 팔레이 나랑(Pally Narang)은 6월 20일자 블룸버그 택스(Bloomberg Tax)와의 이메일을 통해 “동 조항이 기업들에게 추가세액 납부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목적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개정 공고안은 현 시점부터 기업들이 인도로 자금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공고안은 최초로 수립하는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팔레이 나랑은 밝혔습니다.

모호성 불식을 위한 인도 세무당국의 노력

인도 정부의 개정 공고안에 따르면, 해외관계사와 이전가격거래를 수행하는 인도 기업들은 “초과수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초과수익”이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여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평가 사업연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천만 루피(약 1억 6천만 원)를 초과하는 1차 조정 정상가격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2차 조정 관련 인도 이전가격법률을 2017년 재정법(Finance Bill)을 통해 추가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실무자에 따르면 과거 조정금액은 개정 공고안과 동일하게 인도로 회수되어야 했으나, 과거 법률은 조정금액의 회수 시점이 모호하여 이례적인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드루바(Dhruva Advisors LLP)에서 재직중인 라울 미트라(Rahul Mitra)는 법인세 신고일로부터 2차 조정금액이 인도로 회수되어야 한다는데 논리가 충분치 않으며, 이에 기업들은 인도 정부가 개정안의 모호성을 불식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6월 20일 블룸버그 텍스와의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더불어 라울 미트라는 “인도 과세당국이 새로 도입한 개정안은 매우 긍정적이고 칭찬받아 마땅하며, 동 개정안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일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공고안에 대해 논평은 7월 9 일까지 접수됩니다.

[Back to t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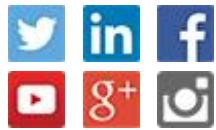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